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3
----------	-----

제출년월일 : 1998.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현재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의 종목을 확대하고 쓰레기실명제와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감면기준을 정하였고 소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적기에 배출토록 3ℓ 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제작기준을 정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정으로 청문조항을 삭제하여 쓰레기발생을 최대한 줄여 주민의 부담경감과 자원의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 요 골 자

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개정 (안 별표1)

- 대형 폐기물배출자가 읍면동사무소까지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

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 개정 (안 별표2)

-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확대 (페스티로폴류)

다.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개정 (안 별표3)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3ℓ 제작

라.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 개정 (안 별표4)

- 쓰레기봉투에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삽입

마. 청문조항 삭제 (안 제21조)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중 “ 별표4” 를 “ 별표4-1, 별표4-2, 별표4-3, 별표4-4, 별표4-5” 로 한다.

제9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형폐기물배출자가 읍면동사무소까지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
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제9조 제2항중 용량별·판매가격·판매소공급가격·판매이익·비고란 다음에 3ℓ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ℓ	50	46	4	
----	----	----	---	--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1, 별표4-2, 별표4-3, 별표4-4, 별표4-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9조 관련)

종 별	부 과 기 준	부과금액(원)	비 고
냉 장 고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6,000	
	300ℓ 미만	4,000	
텔 레 비 전	19인치이상	5,000	
	19인치미만	3,000	
세 탁 기		3,000	
에 어 콘	264m'형이상	8,000	
	66m'형이상	5,000	
	66m'형미만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1m이상	4,000	
	높이1m미만	2,000	
탈 수 기		2,00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2,000	
장 농	120cm이상1쪽	15,000	
	120cm미만1쪽	10,000	
서 랫 장	5단이상	4,000	
	4단이상	2,000	
신 발 장		2,000	
문 감		3,000	
화 장 대		3,000	
장 식 장		4,000	
용 접 셋 트	장의자(3인이상)	5,000	
	의 자(2인이상)	2,000	

종 별	부 과 기 준	부과금액(원)	비 고
침 대	1인용	10,000	
	1인용 매트리스	5,000	
	2인용	15,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캐 비 넷		4,000	
화일캐비넷	4단 이상	3,000	
	3단 이하	2,000	
양 수 책 상		7,000	
편 수 책 상		4,000	
피 아 노		15,000	
울 겐		4,000	

주) 1.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처리비가 포함된 가격임.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수수료의 부과기준에서 솜, 스티로폼, 압축하지 않은 캔, 드럼통 등과 같이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의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은 세제곱미터(m³) 단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과정에서 성분시험, 계근 등을 실시하여 수집·운반업자가 수수료 등을 납부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수수료 등의 실비를 수집·운반 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대형폐기물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4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 이 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아야 함. - 반드시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 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과자류, 포장상자, 기타 골 판지 상자등)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 록 묶음
2. 캔 류	- 철캔,알루미늄캔 (음·식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 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3. 병 류	- 음료수병,기타병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 로 행구어 배출 - 담배꽂초등 이물질들 넣지 말 것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서 팔 수 있음 - 물로 행군후 음료수병과 섞이지 않도 록 별도 배출
4. 고 철 류	- 고철(공기구,철사 못,철판등 쇠붙이)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전선,알루 미늄 샷시류)	- 위와 같음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5. 플라스틱류	- PET병 - 합성수지 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플라스틱재질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폐유 용기류는 제외
6. 페스티로폴류	- 페스티로폴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생선상자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행구어 배출 - 「가전제품포장용 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화지침」(환경부고시 제95-90호, '95. 8. 5)에 의하여 제조자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날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등에게 직접 배출 ※1회용 컵라면용기·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페스티로폴은 제외

(별표 3)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제6조 관련)

구 분	봉투용량(ℓ)	봉투규격 (가로×세로. cm)	호칭두께(mm)	
			저밀도	고밀도
음식물쓰레기전용	3 ℓ	22×39.5	0.025	0.020
일 반 용 음식물쓰레기전용	5 ℓ	26×46.5	0.025	0.020
공 공 용 일 반 용 음식물쓰레기전용	10 ℓ	33×56.5	0.025	0.020
공 공 용 일 반 용 음식물쓰레기전용	20 ℓ	42×69.5	0.030	0.025
일 반 용 음식물쓰레기전용	30 ℓ	48×78.5	0.030	0.030
공 공 용 일 반 용	50 ℓ	56×91.5	0.040	0.035
일 반 용	75 ℓ	65×103.5	0.045	0.040
공 공 용 일 반 용	100 ℓ	71×113.5	0.050	0.045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일반용봉투 앞면문구)

점선 윗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 마 크)

쓰레기 봉투 (ℓ)

- 일 반 용 -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배출자	주소	
	성명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 파 주 시 ○

품질인증표시

재질분류표시

(별표4-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공동주택용봉투 앞면문구)

점선 윗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 마 크)

쓰레기 봉투 (ℓ)

- 공동주택용 -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배 출 자	주 소	
	성 명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파 주 시



품질인증표시



재질분류표시

(별표4-3)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음식물쓰레기 전용 일반용봉투 앞면문구)

점선 위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 마 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ℓ)

- 일 반 용 -

-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만 수거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배출자	주 소	
	성 명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 파 주 시

↓

품질인증표시

○

↓

재질분류표시

(별표4-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음식물쓰레기 전용 공동주택용봉투 앞면문구)

점선 윗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 마 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ℓ)

- 공동주택용 -

-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만 수거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배 출 자	주 소	
	성 명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파 주 시

품질인증표시

제질분류표시

(별표4-5)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공공용봉투 앞면문구)

점선 위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 마 크)

쓰 레 기 봉 투 (ℓ)

- 공 공 용 -

○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는 파주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으시다.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배 출 자	주 소	
	성 명	
실명제에 참여합니다.		

파 주 시

품질인증표시

재질분류표시

신 · 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③ (생략)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등을 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능폐기물은 <u>별표2</u> 와 같은 요령으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등을 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능폐기물은 <u>별표2</u> 와 같은 요령으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등) ①~② (생략)	제6조(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u>별표3</u> 과 같다.	③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u>별표3</u> 과 같다.			
제7조(쓰레기 봉투의 제작등) ①~④ (생략)	제7조(쓰레기 봉투의 제작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제6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은 <u>별표 4</u> 와 같다.	⑤제6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은 <u>별표4-1, 별표4-2, 별표4-3, 별표4-4, 별표4-5</u> 와 같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다만, 대형폐기물배출자가 읍면동사무소까지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6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며, 그 가격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6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며, 그 가격은 다음과 같다.			
용·량 별	판매가격	판매소공급가격	판매이익	비 고
5ℓ	80	74	6	
10ℓ	160	148	12	
20ℓ	320	296	14	
30ℓ	470	434	36	
50ℓ	780	720	60	
75ℓ	1,160	1,070	90	
100ℓ	1,500	1,380	120	

신·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청문) 시장은 제20조에 의거 봉투판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 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청문) (삭 제)		

신 · 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별표 1)		(별표 1)		(별표 1)	
대형폐기물수집 · 운반 · 처리수수료(제9조 관련)		대형폐기물수집 · 운반 · 처리수수료(제9조 관련)		대형폐기물수집 · 운반 · 처리수수료(제9조 관련)		대형폐기물수집 · 운반 · 처리수수료(제9조 관련)		대형폐기물수집 · 운반 · 처리수수료(제9조 관련)	
종	별	부	과	기	준	부	과	기	준
냉	장	고	500ℓ 이상	300ℓ 이상	300ℓ 미만	19인치 이상	19인치 미만	3,000	8,000
텔	레	비	전						
세	탁	기							
에	어	콘							
가	스	오	본	렌	저				
탈	수	기							
공	기	청	정	기					
장									
서	랍	장							
신	발	장							
문	갑								
화	장	대							
장	식	장							
응	접	셋	트						

신 · 구문대조표

현				행							
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9조 관련)				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제9조 관련)							
종	별	부	과	기	준	부	과	금	액(원)	비	고
칩	대	1인용	1인용 매트리스	10,000							
		2인용	2인용 매트리스	5,000							
		2인용 매트리스	15,000								
캐	배	넷									
화일캐비넷		4단 이상		3,000							
		3단 이하		2,000							
양	수	책	상								
편	수	책	상								
피	아	노									
을	랜			15,000							
				4,000							

주) 1.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처리비가 포함된 가격임.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수수료의 부과기준에서 솜, 스티로폼, 압축하지 않은 캔, 드럼통 등과 같이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의 처리 수수료 부과 기준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과정에서 성분시험, 계근 등을 실시하여 수집·운반업자가 수수료 등의 실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수수료 등의 실비를 청구할 경우 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대형폐기물종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종	별	부	과	기	준	부	과	금	액(원)	비	고
칩	대										
캐	비	넷									
화일캐비넷											
양	수	책	상								
편	수	책	상								
피	아	노									
을	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처리비가 포함된 가격임.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수수료의 부과기준에서 솜, 스티로폼, 압축하지 않은 캔, 드럼통 등과 같이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의 처리 수수료 부과 기준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3.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과정에서 성분시험, 계근 등을 실시하여 수집 · 운반업자가 수수료 등을 납부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수수료 등의 실비를 수집 · 운반 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대형폐기물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신 · 구문대조표

행			정			안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4조 관련)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4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5.(생략) (신설)		(생략) (신설)		(생략) (신설)				
1.-5.(현행과 같음) 6. 폐스티로폼류		(현행과 같음) - 폐스티로폼		(현행과 같음)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생선상자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 완충재감량화지침』(환경부고시 제95-90호 '95. 8. 5)에 의하여 제조자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날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폼 완충재를 제조자등에게 직접 배출 ※1회용 커피라면용기·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신 · 구문대조표

현			형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별표 3)			(별표 3)			(별표 3)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제6조 관련)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제6조 관련)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제6조 관련)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제6조 관련)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제6조 관련)		
구	분	용	쓰레기봉투용량(ℓ)	쓰레기봉투규격 (가로×세로 cm)	쓰레기봉투두께(mm)		구	분	용	쓰레기봉투용량(ℓ)	쓰레기봉투규격 (가로×세로 cm)	쓰레기봉투두께(mm)		
					저밀도	고밀도						저밀도	고밀도	
일	반	용	5ℓ	26×46.5	0.025	0.020	일	반	용	3ℓ	22×39.5	0.025	0.020	
공	반	용	10ℓ	33×56.5	0.025	0.020	공	반	용	5ℓ	26×46.5	0.025	0.020	
일	반	용	20ℓ	42×69.5	0.030	0.025	일	반	용	10ℓ	33×56.5	0.025	0.020	
공	반	용	30ℓ	48×78.5	0.030	0.030	공	반	용	20ℓ	42×69.5	0.030	0.025	
일	반	용	50ℓ	56×91.5	0.040	0.035	일	반	용	30ℓ	48×78.5	0.030	0.030	
공	반	용	75ℓ	65×103.5	0.045	0.040	공	반	용	50ℓ	56×91.5	0.040	0.035	
일	반	용	100ℓ	71×113.5	0.050	0.045	일	반	용	75ℓ	65×103.5	0.045	0.040	
공	반	용	100ℓ	71×113.5	0.050	0.045	공	반	용	100ℓ	71×113.5	0.050	0.045	